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건설형 민자사업 유형 추가 및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연장 등〉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61호)

2026. 7.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참고사항	2
V . 검토의견	3
1. 개정안 개요	3
2. 건설형 민자사업(BT) 방식 신설 및 송전사업 추진 근거 명시	5
가. 민간투자 추진 방식으로 건설형 민자사업(BT) 방식 신설(안 제4조 제5호 신설 등)	5

나. 건설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송전사업 추진 근거 명시(안 제7조의5 등 신설)	14
3. 부대사업 활성화(안 제21조의2, 제30조)	24
4.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중 공용시설의 예시를 ‘병영시설’에서 ‘국방시설’로 확대(안 제2조제1호다목)	40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안도결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 2026. 5. 13.

다. 회 부 일 : 2026. 5. 14.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도 민간투자사업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부대사업 자금은 보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으로 공급이 시급하고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권을 행사하는 BTO 방식 또는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방식보다, 민간의 자본력으로 신속히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등으로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국가등이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이 적합한 경우도 있어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내용

- 가.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병영시설’에서 ‘국방시설’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다목).
- 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총민간투자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함(안 제4조제5호 신설 등).
- 다.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함(안 제21조의2).
- 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민간투자사업자금뿐만 아니라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함(안 제30조).

Ⅳ.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V. 검토의견

1. 개정안 개요

민간투자사업이란 기존에 정부부문의 범주에 속했던 도로·항만·철도·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및 대상을 다변화하고 부대사업의 제약 요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① 건설형 민자사업(BT) 방식 신설, ② 송전사업 추진 근거 명시, ③ 부대사업 활성화, ④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확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① 건설형 민자사업(BT) 방식 신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총민간투자비를 국가 등이 협약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새로운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여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② 송전사업 추진 근거 명시는 국가적 과제인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하여 송전사업자가 상기 BT 방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 승인 등 별도의 특례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

③ 부대사업 활성화는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본사업의 사용·수익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에 부대사업 자금을 포함함으

로써 부대사업의 수익성과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④ 사회기반시설 범위 확대는 공용시설의 법정 예시를 기존 ‘병영시설’에서 포괄적인 ‘국방시설’로 개정하여 국방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참여 대상을 넓히려는 것임.

이하 조문별로 주요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2. 건설형 민자사업(BT) 방식 신설 및 송전사업 추진 근거 명시

가. 민간투자 추진 방식으로 건설형 민자사업(BT) 방식 신설(안 제4조제5호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ㄴ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 <신 설> ○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 ㄴ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u>임대형 민자사업</u>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함 - ㄴ 정부는 <u>임대형 민자사업</u>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 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u>임대형 민자사업</u>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u>임대형 민자사업</u>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 ㄴ 기획예산처장관은 <u>임대형 민자사업</u>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ㄴ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 <u>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며, 총민간투자비를 국가·지자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u> ○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 ㄴ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u>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u>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함 - ㄴ 정부는 <u>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u>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 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u>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u>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u>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u>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 ㄴ 기획예산처장관은 <u>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u>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

현행	개정안
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u>임대형 민자사업</u> 정부지급금추계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함 ○ <신설>	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u>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u> 정부지급금추계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함 ○ <u>건설형 민자사업 등의 총민간투자비 지급</u> - 국가·지자체는 <u>건설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이전된 경우 실시협약에서 결정된 사업수익률을 적용한 총민간투자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함</u> - <u>총민간투자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u>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의 형태로 추진되는데, BTO는 사회기반시설 운영과정에서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BTL은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임.¹⁾

1) BOT(Build-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 방식 등도 있으나, 실제 사례는 거의 없음.

[민간투자사업 유형 개요]

유형	내용	비고
BTO (Build-Transfer-Operate)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BTL (Build-Transfer-Lease)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BOT (Build-Operate-Transfer)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BOO (Build-Own-Operate)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민간투자법」 제4조제4호)	

자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등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은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으로 건설형 민자사업인 BT(Build-Transfer) 방식을 신설하여, 공급이 시급하고 공공성이 강한 시설을 민간의 자본력으로 신속하게 확충하려는 것임.

BT 방식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신 국가 등이 실시협약에서 결정된 사업수익률을 적용한 총민간투자비를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함. 기존 BTO나 BTL 방식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해주고 장기간(최대 50년)에 걸쳐 사용료나 임대료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하는 것과 달리, BT 방식은 민간의 운영(Operate) 과정이 배제되며 준공 후 국가 등이 직접 투자비 원금과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추가적으로 개정안은 BT 방식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유사하게 국회의 사전 의결 및 엄격한 재정 통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가 BT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대상시설별 총한도액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²⁾, 정부가 이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또한,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

2) 다만, BT사업 중 송전사업자가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제외하였음(목차 ‘나. 건설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송전사업 추진 근거 명시’ 참고)

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였으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BT 방식 민자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연도별·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한 정부지급금추계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음.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국회에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게 됨.

건설형 민자사업(BT 방식) 신설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첫째, 민간의 자본력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첨단산업을 위한 국가 핵심 전략 인프라를 보다 신속하게 확충하되, 운영은 공공이 직접 통제함으로써 공공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최근 AI·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인해 송전망 등 대규모 전력 인프라와 방위산업·전략시설 등의 국가 핵심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정부의 국가 재정만으로 적기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송전망 등 핵심 기간시설의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해 신속하게 건설할 필요성은 크나, 안보나 국가 전략상 '공공이 직접 운영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민간에게 장기 운영권을 부여하는 기존 BTO나 BTL

방식으로는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음.

개정안에 따른 BT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Build)에만 집중하고 준공 직후 소유권과 운영 책임을 국가 등 공공에 곧바로 이전(Transfer)하므로, 민간의 장기 운영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사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이 직접 시설을 통제할 수 있게 함.

둘째, 국가의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규모 SOC 건설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BT 방식을 도입하면 대규모 초기 건설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일시에 지출하지 않고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게 되므로, 정부의 단기 재정 압박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면서도 경기 진작과 인프라 선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 재정부담 및 무분별한 사업 추진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 BTL 방식과 유사하게 국회의 대상시설별 총한도액 심의·의결 조항과 10회계연도 이상의 정부지급금추계서 제출 의무화 등 사전 재정 통제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에 따른 건설형 민자사업(BT)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존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민간의 ‘운영(Operate)’ 단계가 배제되어 민간투자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기존 BTO·BTL 방식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민간투자사업이란 기존에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사회기반시설(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이 담당하여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는 제도임. 기존 BTO 방식은 민간이 직접 수요를 창출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BTL 방식 역시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되 민간 사업시행자가 장기간 시설의 유지보수·관리를 책임짐으로써 총비용을 절감하는 구조임.

그러나 개정안의 BT 방식은 관리운영권 설정 없이 시설의 준공 후 민간 사업시행자는 운영·관리 책임을 공공에 넘기고 투자비만 직접 정산받는 구조임. 이로 인해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없으며 이는 민간투자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BT 방식이 도입될 경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BTO와 같은 수요 변동 위험이나 BTL과 같은 장기 유지관리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도, 약정된 원금과 수익을 단기간에 보장받을 수 있게 됨. 이로 인해 민간 사업시행자들이 운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기존의 방식을 비선호하고 시장의 자금과 역량이 리스크가 없는 BT 방식에만 쏠

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함.

둘째, 단기적인 재정 지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경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개정안이 국회의 한도액 사전 의결 및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 BT 방식은 기존 BTL 방식과 마찬가지로 준공 후 매년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출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BT 방식을 통해 체결된 분할 지급 의무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임. 단기적인 재정(예산) 지출을 회피하고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BT 방식이 남용될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BT 방식의 도입은 기존 BTO나 BTL, 또는 단순 재정사업으로는 적시에 공급이 불가능한 국가 전략상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로 대상과 선정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통제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관리운영권 설정 없이 준공 후 투자비만 직접 정산받는 구조는 재정 절감 및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는 민간투자 제도 본연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사업시행자가 운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채 사전에 약정된 수익을 단기간에 보장받게 되어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장기간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충당하는 기존 방식(BTO, BTL 등)을 구축할 우려가 크며, BT 사업 방식은 현행 BTL 사업과 같이 매년 지출해야 하는 정부지급금이 일반정부 부채(D2)에 포함되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나. 건설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송전사업 추진 근거 명시
(안 제7조의5 등 신설)

현행	개정안
○ 정의 －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함 · <신설>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 <신설> ○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함 ○ <신설>	○ 정의 －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함 · 「전기사업법」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포함함)에 귀속되며, 총민간투자비를 국가·지자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송전사업자가 총 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제외함)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함 ○ 송전사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승인 － 송전사업자는 건설형 민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송전사업자는 건설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현행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상 대규모 송전설비 등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로 한정되어 있어³⁾,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 및 운영을 전담하고 있음.

개정안은 건설형 민자사업(BT) 방식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이를 전력망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준공된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주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송전사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시행자가 송전탑이나 송전선로 같은 전력망 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전력망의 소유권과 모든 운영 권한을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에게 넘김(Transfer). 그 대신 한국전력공사는 일시에 막대한 건설 대금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실시협약에서 미리 약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익률을 적용한 총민간투자비를 민간사업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게 됨.

또한, 개정안은 전력망 사업의 신속한 적기 공급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향후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사전에 국회로부터 대상시설별 총한도액을 의결받아야 하는 일반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BT 사업과 달리 송전사업자 추진 사업은 총한도액 국회 사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절차적 특례를 규정하였음.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대신, 국회 사전 통제가 배제됨에 따른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전사업자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력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추가하였음.

결과적으로 개정안은 고도의 보안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핵심 국가 전력망의 ‘운영’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면서도, 인프라 ‘건설’에 즉각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천문학적인 자금 부담과 시공의 지연 문제는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빌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이를 통해 누적 적자에 직면한 한국전력공사의 초기 건설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공급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자체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건설형 민자사업(BT) 방식으로 송전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민간투자법」에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정부의 정책 방향 및 개별법 개정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인 「민간투자법」을 동시에 개정할 경우 중복 입법 및 법 체계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정부는 지난 2026년 2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전력망 구축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26.2.11.) 중 전력망 구축 부분]

② 에너지고속도로(전력망) 구축에 민간자본 활용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 등을 토대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방안 마련·추진(기후부)

* 안도걸의원 개정안(25.10월 발의): 전력망투자 심의를 거쳐 기후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전력망 개발사업 가능(소유·운영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전에 귀속)

< 향후 추진방안 >

- ▶ 민간자본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하위법령·지침 등 마련*(기후부), 민간 전력망 건설사업 표준실시협약안(PIMAC 세부요령) 등 지원(기획처)
- * 추진 조건·절차, 설비의 양도·양수 방법, 비용의 산정·정산, 지정의 효력·취소 등
- ▶ 국민성장펀드('26년~'30년 150조원) 등을 활용하여 전력망 건설자금을 지원(금융위)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전력망 확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외의 민간 사업자도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시설 준공 즉시 관련 전력망 설비 일체를 송전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양도하도록 조건화하는 등 전력망 부문에 특화된 BT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2026년 5월 의결하였음.

이와 같이 전력망 확충에 특화된 개별법을 통해 송전망 민간투자의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인 「민간투자법」에

송전사업자를 중복하여 명시할 실익은 적어 보임. 개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특정 사업(송전사업)과 특정 기관(한국전력공사)을 예외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법 체계상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두 법률 간의 적용 순위나 절차적 관계가 혼선을 초래할 소지도 있음. 따라서 전력망 부문의 민간투자 도입은 해당 산업의 특수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개별법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둘째, 민간투자법상의 엄격한 추진 절차가 적용될 경우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주무관청과 송전사업자 간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해질 수 있음.

「민간투자법」은 대규모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을 엄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자적격성조사, 대상사업 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실시협약 체결 등 타당성 검토 및 추진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송전사업을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추진할 경우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위해 송전망을 신속하게 확충하고자 민간투자를 도입하는 특별법의 개정 취지가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상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제반 절차의 주체는 ‘주무관청’인데, 개정안에 따라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주체가 될 경우 기존 주무관청(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을 위탁받

는 것인지, 아니면 주무관청이 그대로 수행하는 것인지 등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한계가 있음.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이미 개별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이 추진 중이므로 「민간투자법」 개정의 실익이 적고, 「민간투자법」 적용 시 절차 중복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법 체계상 부적절하며, 「민간투자법」상 재정지원 근거가 적용될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할 송전사업 비용에 대하여 국고 보조 등 재정지원이 요구되어 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고, 특정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에 주무관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민간과 공공의 경쟁을 유도하는 민간투자제도의 본래 취지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전력망 민영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4. ----- ----- -----.
가. ~ 카. (생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신설>	타. 「전기사업법」
15. ~ 17. (생략)	15. ~ 17. (현행과 같음)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u>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총민간투자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u>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	6. ----- ----- -----

현행	개정안
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제5호----- ----- ----- -
6. (생략)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 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 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 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 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 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 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 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 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 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송전사업자가 총민간 투자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제외한 다. 이하 “건설형 민자사업”이라 한 다)-----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대형 민 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 ----- ----- -----. ④ -----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 -----.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 -----임대형 민자사 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 -----

현행	개정안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 제7조의5(송전사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승인) ① 송전사업자는 제4조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송전사업자는 제4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예산처 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 -----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 ----- ----- -----임대형 민자사업 및 건설형 민자사업-----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건설형 민자사업 등의 총민간투자비 지급) ① 국가 또는 지방

현행	개정안
	자치단체(송전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4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경우 실시협약에서 결정된 사업 수익률을 적용한 총민간투자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민간투자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대사업 활성화(안 제21조의2, 제30조)

현행	개정안
○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 <신설> ㉡ <신설>	○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 <u>사업시행자가 부대시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경우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시설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u> ㉡ <u>부대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적정 수익률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당 민투사업의 사용료 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u>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 <u>민간투자사업자금(부대사업 자금 포함)</u>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함

개정안은 기부채납된 부대시설(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동일하게(최대 50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보증대상에 부대사업 자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부대사업의 수익성과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주택 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 각 호4)의 사업을 말함.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4항5)에 따라 부대사업의 사업비가 해당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이내이면서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부대사업의 이익은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여야 함.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填)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운영 사업
 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사업
 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운영 사업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⑭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현행법상 본사업(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을 최대 50년(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까지 무상으로 사용 및 소유·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⁶⁾ 그러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⁷⁾, 그 사용·수익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수익기간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그 사용·수익기간은 기부 받은 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년으로 제한됨.

-
-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소유·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2.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구 분		사용허가(대부)기간		근 거
국유재산	행정재산	원칙 5년 이내 * 기부채납시, 사용료 총액이 기부 받은 재산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 동일 기간 1회만 갱신		「국유재산법」 제35조
	일반재산	조립 목적의 토지·정착물	원칙 20년 이내 동일 기간 1회만 갱신	「국유재산법」 제46조
		사용자가 보수한 건물	원칙 10년 이내 동일 기간 1회만 갱신	
		영구시설물	원칙 10년 이내	
		축조한 경우	동일 기간 1회만 갱신	
		그 외 토지·정착물	원칙 5년 이내 동일 기간 1회만 갱신	
		기타재산	원칙 1년 이내 동일 기간 1회만 갱신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원칙 30년 이내 20년 이내 1회만 갱신	
공유재산	행정재산	원칙 5년 이내 * 기부채납시, 사용료 총액이 기부 받은 재산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최장 20년) 동일 기간 1회만 갱신 * 기부채납시, 10년 이내 1회만 갱신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일반재산	토지·장착물	원칙 5년 이내 동일 기간 1회만 갱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기타재산	원칙 1년 이내 동일 기간 1회만 갱신	

즉,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은 현행법 제 25조에 따라 최대 50년 이내이나, 기부채납된 부대시설의 무상 사용·수익 기간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규정이 없어 본사업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 해당 부대시설을 본사업(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

간 및 소유·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함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특히, 개정안은, 기간 연장에 따라 적정 수익률 이상의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

또한,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증의 대상을 ‘민간투자사업자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어⁸⁾ 부대사업을 위한 자금은 보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금의 보증대상 범위에 ‘부대사업 자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부대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와 같은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전반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첫째, 기부채납한 부대시설의 사용·수익기간이 최대 50년까지 연장되어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이 증가하므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부대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 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그럼에도 현행법에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됨. 이에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대사업이 본사업보다 단기간 운영될 수밖에 없어 투자비 보전 및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개정안과 같이 기부채납된 부대시설을 본사업과 동일한 기간 동안(최대 50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 기간 관련 특례를 규정하면, 부대사업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므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부대사업의 기간 연장에 따른 초과수익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명시적으로 환수·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사용료를 인하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민간투자사업 실시 시 필요한 경우 현행법 제53조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국가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함. 전술한 바와 같이 부대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부대사업의 이익은 현행법 제21조제1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10)에 따라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기부채납된 부대시설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부대사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이용자가 지급하는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또는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특히, 개정안은 부대사업 사용기간 연장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적정 수익률 이상의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는 부대사업의 초과이익이 국민과 국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부대사업 기간 연장사업시행자에 대한 단순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기금의 보증 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본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인프라 공급을 지원할 수 있음.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⑮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②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의 인하,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 반영해야 한다.

현행법상 기금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한정하여 금전채무를 보증하고 있어, 본사업과 연계하여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대사업 자금 조달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최근 고금리 및 고물가 등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개정안과 같이 부대사업 자금을 보증 대상에 포함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다 원활하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 이는 자금 경색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적기 추진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 적시·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현행법 제21조¹¹⁾에 따라

-
-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시행목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부대사업 또는 승인받은 부대사업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실시계획에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 되고,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면 되며,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에도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부대사업은 별도의 경쟁 입찰 등 없이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구조임.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게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할 경우, 특정 사업자에게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재산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부대사업의 초과수익을 사용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순이익 및 적정 수익률을 정확히 추정하여 실시협약에 반영해야 하나, 만약 사업 초기에 순이익 및 적정 수익률이 과소 산정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장기 운영권이라는 혜택만 부여되고 실질적인 사용료 인하 및 재정지원 절감 효과는 미미할 우려가 있음.

둘째, 현재도 부대사업의 이익 공유 근거가 포괄적으로 존재하며, 초과수익 기준을 하위법령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개별 사업의 신축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 부대사업의 이익은 현행법 제21조제1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체 이익에 대한 포괄적 공유 근거를 이미 마련해 두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적정 수익률’과 ‘초과수익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일률적으로 법제화할 경우, 지역 여건이나 부대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사업별 특성을 실시협약에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자율적인 협상 범위를 축소시켜 오히려 부대사업 추진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셋째, 기금의 보증 대상을 부대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기금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필수적인 본사업에 대한 보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현행법 제34조제3항¹²⁾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이를 ‘운용배수’라 함), 현행법 시행령 제29조제1항¹³⁾에 따르면 기본재산(출연금 및 적립금)의 20배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금은 BIS자기자본비율 최소한도인 8%를 반영하여 기금 내부 적정배수를 기본재산의 12.5배¹⁴⁾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금 운용배수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4) 운용배수 = 보증잔액(위험가중자산) ÷ 기본재산(자기자본) = 12.5배(=100/8)

추이를 보면 2015년에는 12배 수준이었으나 2024년 운용배수가 법정 한도(20배)의 76.5%인 15.3배까지 상승하는 등 운용배수가 커지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유사한 기관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임.¹⁵⁾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용배수 등]

(단위: 억원, 건, 배, %)

연도	보증 공급액	누계	보증 공급건수	보증잔액 (A)	기본재산 (B)	운용배수 (A/B)
2015	17,833	193,213	22	82,868	6,884	12.0
2016	25,905	219,118	17	93,325	7,183	13.0
2017	20,286	239,404	13	98,536	7,416	13.3
2018	20,832	260,236	16	105,539	7,753	13.6
2019	18,102	278,338	12	111,559	8,025	13.9
2020	20,513	298,849	12	114,001	8,345	13.7
2021	25,642	324,492	13	127,402	8,635	14.8
2022	23,106	347,598	6	128,873	8,789	14.7
2023	26,543	374,141	6	140,689	9,557	14.7
2024	31,399	405,540	16	157,000	10,272	15.3

자료: 신용보증기금

또한, 동 기금은 1994년 설립 이래 2024년까지는 단 한번도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증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되어 왔으나, 2025년 5월에 최초로 18.2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한 바 있음.

15) 2024년말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는 8.2배, 기술보증기금은 8.6배임.

[2025년 발생한 대위변제 개요]

사업명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BTO)		
시행자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주)	주무관청	전라남도
운영기간	'12. 7월 ~ '23. 12월 [기존 '30. 7월]	채권은행	광주은행
보증기간	'11. 10월 ~ '28. 7월	대위변제금액	18.2억원
주요경과	○ '11. 6월 : 산업기반신용보증서(91억원) 승인·발급, 채권은행 대출 실행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 '24. 7월 : 채권은행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신용보증 부실통지 * 채권은행 동의 없이 주무관청과 시행자 합의로 실시협약이 단축 해지되었고, 해지에 따라 해당 물건에 대한 관리운영권 종료로 대출 원리금 일부 연체 ○ '25. 1월 : 채권은행 보증채무 이행 청구 ○ '25. 5. 20. : 보증채무 이행(대위변제금액 18.2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운용배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기금 조성 이후 최초로 대위변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기금의 재무위험 요인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대사업에까지 국가 재정을 통한 보증을 제공할 경우 기금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부대사업으로 인한 기금 한도 소진은 정작 필수적인 본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보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기획예산처는 기부채납된 부대사업 시설의 사용·수익 기간을 본사업과 동일하게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단가 상승 등이 사용료 인상으로 전가될 우려가 제기되어 온 만큼,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이를 사용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부대사업 초과수익 환수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주무관청이 부대사업의 이익을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전체 이익에 대한 포괄적인 공유 근거가 이미 존재하므로 별도의 근거 신설은 불필요하며, 초과수익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개별 사업별 여건을 반영한 신축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또한, 기금의 보증 대상을 부대사업 자금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대사업이 본사업(사회기반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고 사업 사고 발생 시 해지시지급금¹⁶⁾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금의 재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공공성이 부족한 부대사업에 국가 보증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고 정부 출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작 본사업에 대한 보증 여력을 축소시켜 보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하였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742호, 2024.10.17.)에서도 본 개정안과 유사하게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대사업 관

16) 협약 해지 시 주무관청에 시설 귀속 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런 내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만이 반영되어 수정의결 된 바 있음.

또한, 동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
납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
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국유
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62호)이 함께 발의되
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생략) <u><신 설></u>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경우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시설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5조에 따른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u><신 설></u>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부대시설을 사용·수익하는 부대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적정 수익률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부대사업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

현행	개정안
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략)	<u>에서 같다</u>)----- ----- -----. ② (현행과 같음)

4.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중 공용시설의 예시를 ‘병영시설’에서 ‘국방시설’로 확대(안 제2조제1호다목)

현 행	개 정 안
○ 정의 -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 ·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u>병영시설</u>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 정의 -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 ·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u>국방시설</u>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현행법상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용 시설의 예시로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공용시설의 예시 중 협소한 의미의 ‘병영시설’을 포괄적인 의미의 ‘국방시설’로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방 분야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군부대 이전이나 복합 군사시설 개발 등 관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뿐만 아니라 국방·군사 관련 연구·시험 시설, 군용 유류·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임.¹⁷⁾

물론 현행법 체계에서도 병영시설은 공공용 시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므로,¹⁸⁾ 현재도 병영시설 외에 군 관사, 간부숙소, 교육시설 등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예시를 협의의 병영시설에서 광의의 국방시설로 명확히 개정함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단순 병영시설 외에 복합 군사시설, 첨단 연구시설 등 다양한 국방 인프라 역시 민간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인식시켜 신규 사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조제2호는 군사기밀 취급 시설,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등 민간부문에서 운영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¹⁹⁾

1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이 도입하려는 국방시설이라는 용어는 전투 시설이나 기밀 시설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자칫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안보상 민감한 핵심 군사작전 시설까지 열리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행법 제2조제2호의 적용 제외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시설은 여전히 민간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기획예산처도 병영시설 이외의 다양한 국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동 개정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임.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외교정보통신망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u>병영시설</u>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다. ----- - <u>국방시설</u> ------ ----- ----- ----- -----

문의처

02)6788-5153